

2019학년도 제2차 한국예술종합학교 재정위원회 회의록

1. 재정위원회 개요

- **일 시:** 2019. 12. 05.(목), 14:00~14:53 ※ 개회 14:09, 폐회 14:53
- **장 소:** 석관동교사 본관 4층, 총장부속회의실
- **출석위원: 9명**(재적위원 15명)
 - **당연직위원(3명 참석)**
 - 사무국장, 연극원장, 미술원장
 - ※ 불참위원: 교학처장, 기획처장, 음악원장, 전통예술원장
 - **일반직위원(6명 참석)**
 - 외부위원 2명, 교원대표 1명, 직원대표 2명, 학생대표 1명
 - ※ 불참위원: 교원대표 1명, 학생대표 1명
- **기타 참석자**
 - 시설과장 및 관련 주무관 2명
- **회의 안건**
 - **보고 안건**
 - 재정위원회 위원 임기 등 운영보고
 - **심의·의결 안건**
 - 2019학년도 대학회계 국가지원금 추가경정(안)
 - 2019학년도 대학회계 국가지원금 이용(안)
 - 2019학년도 대학회계 자체수입금 이용(안)
 - **기타 논의**
 - 회의록 서명 위원 호선

2. 재정위원회 회의내용

- **위원 소개**
 - (간사) 출석 위원 전원을 소개함.
- **위원 위촉장 수여**
 - (총장) 일반직위원(출석위원) 1명에게 대표로 위촉장을 수여함.
(나머지 위원은 책상 위에 전달)
- **총장 인사말씀**
 - (총장) 재정위원회 위원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함.
(이후 총장과 위원 전원이 사진촬영을 마친 후, 총장 퇴장)
- **개 회**
 - (간사) 위원장이 공식인 관계로 사무국장이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고 위원의 동의를 구함.
(위원 전원이 동의)
 - (간사) 재정위원회 재적위원 15명 중 현재 9명이 참석하여 과반이 넘는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함.
 - (임시위원장) 개회를 선언 함. (의사봉) [개회시각: 14:09]
- **국민의례**
- **안건 설명**
 - (간사) 회의에 상정된 안건 목록을 설명함.
- **재정위원회 위원장 선출**
 - (간사) 재정위원회 위원장의 역할 및 선출 방식, 대상자 등을 보고함.
 - (임시 위원장) 일반직 위원 중 어느 분이 적절한지 추천을 구함.
 - (○○○ 위원) ○○○ 위원을 추천함.
 - (다수 위원) 동의함.
 - (간사) ○○○ 위원을 위원장으로 상정하고 의견을 물음.
(위원 전원이 동의)

- (임시위원장) 모든 위원의 만장일치로 ○○○ 위원을 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였음을 선포함. (의사봉)
- (위원장) 위원장 선출 인사말씀을 전함.

□ 보고안건. 재정위원회 위원 임기 등 운영보고

- (간사) 재정위원회 위원 임기만료 및 향후 구성방안을 설명함.
- (위원장) 위원에게 의견을 물었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자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기로 하고 다른 위원들도 이에 동의함.
- (위원장) 추경이 1년에 몇 번쯤 이루어지는지 물음.
- (간사) 국가지원금은 통상 1년에 1번 정도임을 설명함.
- (○○○ 위원) 신입 위원들을 위해 재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요구함.
- (간사) 학교의 회계와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의결, 2월 학교예산(안) 확정, 신규 사업이 있는 경우 향후 집행계획을 질의하거나,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감시하는 역할임을 설명함.
- (○○○ 위원) 재정위원회가 타 학교에 구성되어 있는 이사회의 서브 커뮤니티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지 물음.
- (간사) 국립대학교는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재정위원회가 최종 심의·의결 기구임을 설명함.
- (위원장) 예산은 학교구성원의 관심이 많으므로, 관례적인 예산외에 전년 대비 변경되거나 관심 사업에 대해서는 회의자료 전면에 요약하여 위원들이 사전에 인지하고, 교내위원들이 학교구성원의 의견들을 사전에 청취해서 의견을 전달 할 수 있도록 요청함.
- (간사) 내년 2월에 최종예산(안) 안건 상정 시, 증액 등에 대해 상세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함.
- (○○○ 위원) 내년 2월 재정위원회 일정이 확정되었는지 물음.
- (간사) 통상 2월 중순쯤 개최되고, 추후에 확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답변함.
- (○○○ 위원) 원별 예산을 볼 수 있는지 물음.

- (간사) 예산 각목명세서에서 원별예산을 볼 수 있고, 설명자료 풀어서 제공하겠다고 답변함.
- (위원장) 재정위원회 운영 보고에 대해 더 의견이 있는지 위원에게 묻고 더 이상 의견이 없자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기로 하고 다른 위원들도 이에 동의함.

□ 심의안건 ①. 2019학년도 대학회계 국가지원금 추가경정(안)

- (간사) 2019학년도 대학회계 국가지원금 추가경정(안)에 대해서 설명함.
- (위원장) 대학회계 안에 회계기간이 다른 국가지원금과 자체수입금이 분리가 되어있어 추가경정예산이 발생하는 부분임을 재확인 함.
- (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모든 위원의 동의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의사봉)

□ 심의안건 ②. 2019학년도 대학회계 국가지원금 이용(안)

- (○○○ 위원장) 외부위원에게는 생소한 예산의 '이용'의 개념 설명을 요구함.
- (시설과장) 당초 편성된 예산의 부족분이 발생하여 교육공무원 인건비에서 '이용'하여 부족분을 충당하려는 내용임을 설명함.
- (○○○ 위원) '이용'의 개념에 대해 재차 물음.
- (위원장) 간사에게 '이용'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도록 요청함.
- (간사) 정책사업별로 세분화 된 사업마다 책정 된 예산을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에 따라 다른 부서나 항목의 경비로 돌려서 쓴다는 이용(移用)에 대한 개념 설명하고, 예외적인 내용이라 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업에 예산을 돌려서 쓸 수 있음을 설명함.
- (○○○ 위원) 공공요금에 단기적으로 급증한게 아니라 앞으로 이정도 수요로 발생이 될 텐데, 내년도 예산은 증액이 되는지 물음.
- (시설과장) 내년도 예산은 감액요인이 없이 요구한 금액이 반영이 되었으나, 별관 환경개선공사가 진행되어서 개별냉난방기 소요가 많아 추가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부족분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함.
- (간사) 기관공통운영경비와 관련된 부분은 재정당국에서 대폭적으로 증액하지 않아, 현재추세로 보면 내년도에도 여건상 이용(移用)이 불가피할 것이며, 현재 교육공무원이 정원대비 미달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인건비를

공공요금으로 이용(移用)은 가능하나,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요금을 충분히 확보해서 이용(移用)없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부 재정여건상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함.

- **(위원장)** 재정당국에서는 예산편성시 어느 부처나 기본경비, 즉 공공요금 예산은 10년째 동결이며, 기관의 전체예산 운영 시 반납예정액이 발생하면 이용이든 전용이든 쓸 수 있도록 한다고 보완 설명함.
- **(○○○ 위원)** 우리학교 특성상 냉·난방 같은 경우 학생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갑자기 예산증액이 어렵다면 이용(移用)이라는 절차를 거쳐서라도 학생들이 춥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남.
- **(시설과장)**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간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별난방기구 확대 중이며, 특히 별관은 그런 장소가 많아 별관 환경개선공사 시에 개별난방기구를 추가 했다고 답변 함.
- **(○○○ 위원)** 개별난방 기구를 야간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대는 언제인지 물어.
- **(시설과장)** 야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원을 통해 신청하시면 원하는 시간에 가동이 되도록 운영 중이라고 답변함.
- **(○○○ 의원)**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학생들이 연습하기에 너무 힘든 상황임을 설명함.
- **(위원장)** 시설과장께서 공공요금을 충분히 확보해서 학생들이 춥지 않고, 덥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함.
- **(시설과장)** 동절기에는 허가되지 않는 개별난방기 사용이 늘어 화재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화재예방을 위해서라도 개별 냉난방기를 확대하고 있다고 답변함.
- **(○○○ 위원)** 재정당국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잘 해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환경개선공사를 통해 늘어난 공간대비 늘어나는 공공요금의 예산인상을 요청할 수 없는지 물어.
- **(위원장)** 그것이 원칙이긴 하나, 문화체육관광부 대부분의 소속기관들이 예술기관이고, 특히 예술기관은 항온항습시설이 많아 증축과 함께 공공요금 많이 들지만 예산인상은 힘든 상황임을 설명함.
- **(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모든 위원의 동의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의사봉)

□ 심의안건 ③. 2019학년도 대학회계 자체수입금 이용 (안)

- **(학생과 ○○○)** 2019학년도 대학회계 자체수입금 이용(안)에 대해서 설명함.
- **(○○○ 위원)** 학교 특성상 상담원의 예술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한데, 단기 아르바이트처럼 초빙상담원을 운영을 하는 것이 과연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함.
- **(학생과 ○○○)** 예술분야의 경력전문가를 찾기에는 인력풀이 충분하지 않아 해당분야의 경력전문가를 찾는 데는 한계가 있어, 경험이 많은 상담사 위주로 초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현재 초빙상담원은 6~7년의 경력자임.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부분은 동일하므로 예술분야를 알아야만 이해 가능한 부분이 아니고 어떤 부분이 혼란스러운지 잘 파악하여 상담하고 있다고 답변함.
- **(간사) ○○○** 위원의 발언배경은 초빙상담원보다 상근상담원을 채용하여 운영 하는게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인건 알지만, 학교 측에서도 공무원으로 상근직원을 채용을 하고 있지만 공모를 통한 응시비율이 높지 않아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 상근상담원이 채용되기까지 초빙상담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부연 설명함.
- **(○○○ 의원)** 상담원의 공석은 언제쯤 채워질지 물어.
- **(학생과 ○○○)** 공석은 채워졌으나, 공백기간 동안 상담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상담건수 및 상담분야 또한 전반적으로 늘면서 1인당 상담횟수가 많아져서 상담기간이 길어졌음. 장기적으로는 인력을 충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예산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변함.
- **(○○○ 위원)** 학생대표로서 심리상담 신청을 하면 2~3개월 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정말 그런 것인지 물어.
- **(학생심리상담소 실장 ○○○)** 현재 대기자가 30명 정도이고, 2~3개월 대기가 맞으며, 최대한 빠르게 상담을 하기위해 초빙상담원이라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변함.
- **(○○○ 위원)** 대기기간이 3개월씩 길어지는 이유가 무언인지 물어.
- **(○○○ 위원)** 상담을 요청하는 학생수에 비해 상담원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함.
- **(○○○ 위원)** 상태에 따라서 페스트트랙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어.

- **(학생심리상담소 실장 ○○○)** 상담을 빨리 끝낼 수 있는 학생들은 빨리 끝내고 있음. 상담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리미트를 두고 있음에도 상태에 따라 리미트를 넘어가야 하는 학생들이 많고, 전체학생 대비 상담건수가 많은 편이고, 심리적인 문제를 예술로 승화시켜야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도 깊은 현실임을 설명함.
- **(위원장)** 예술대학의 특성 때문에 상담 건수가 많은 것인지 물어.
- **(학생심리상담소 실장 ○○○)**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상담건수가 훨씬 많다고는 못하지만, 경희대·서울예대·항공대 등 근무할 때와 비교해보면 심리적으로 예민도가 훨씬 높고, 그걸 작업으로 활용을 해야 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민함이나 감수성이 높아서 상담을 원하는 학생이 많다고 보여 진다고 답변함.
- **(○○○ 위원)** 상당히 심각하다고 동의함.
- **(위원장)**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충원을 해야겠다고 동의함.
- **(○○○ 위원)** 학생입장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학생들이 학교상담소보다 외부상담소를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외부상담소는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학교에서 케어가 되었으면 한다고 요청함.
- **(위원장)** 학교에서 신경을 좀 써야 할 거 같음. 학생들 특성상 심리적인 문제가 큰 걸로 알고,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많다고 함.
- **(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모든 위원의 동의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의사봉)

□ **기타논의. 회의록 서명 위원 호선**

- **(위원장)** 위원의 의견을 듣고 교원대표 1분, 학생대표 1분, 직원대표 1명이 회의록에 대표로 서명하는 것에 의견을 물어.
(위원 전원이 동의)
- **(위원 일동)** 위원 논의에 따라 교원대표 ○○○ 영상원교수, 학생대표 ○○○ 총학생회장, 직원대표 ○○○ 위원이 서명하는 것으로 정함.
(위원 전원이 동의)

□ **폐 회**

- **(위원장)** 더 이상의 의견이 있는지 위원에게 묻고 의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최종 폐회를 선언함. (의사봉) [폐회시각: 14:53]

2019. 12. 05.